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7일, 박정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1.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5.) 상정, 축조심사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6. 2. 1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2. 1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
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정의원)

최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도급사업의 원·하수급자 구분없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자로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 계약시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건설현장의 실질적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을 하기 위한 계약시에도 안전보건관리비계상을 의무화하여 안전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하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손을춘)

1. 하도급 계약체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에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도급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6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u>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u>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u>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u> ----- ----- ----- -----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설>	⑥ <u>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우선 지급</u>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는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4조(계상기준)는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가 대상액(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이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관계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고시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한 경우 그의 관계수급인이 기준에 따라 사용한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범위에서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

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의무 계상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체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의무 계상 비율을 적용하고, 건설공사도급인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안전관리자 인건비, 시설물 설치 비용 등이 적정 수준으로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하도급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현재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공사 전체의 종류·규모를 고려하여 요율을 산정·적용한 것으로 하도급 계약이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에 소요되는 안전관리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행법은 도급인에게 별도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고¹⁾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인 책임 하에 사용·관리하도록 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하도급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하는

1)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안 제72조제1항에 대하여 건설사 규모·공사 종류·현장 상황 등에 따라 하도급사에 대한 도급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이 다양한데, 이를 법에서 일괄로 정할 경우,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를 총괄하는 도급사의 탄력적 대응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고, 법으로 계상요율을 정하면 도급사는 그 이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하도급사에게 계상하지 않으려는 유인도 생길 것으로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하도급 계약 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우선 지급하는 의무를 건설공사도급인에게 부과하는 안 제72조제6항에 대하여 ①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선지급해야 할 경우 폐업·도주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증서 등을 통한 채권 확보가 필요한데 이는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원하지 않는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②현재도 현장에서는 하도급사가 매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정산받고 있으므로, 선지급의 실익이 적을 뿐 아니라 ③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과정에서 일부 용품업체 등을 통한 불법적인 영수증 처리, 되팔이 사례가 다수 적발되는 상황에서 정산절차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선지급할 경우 불법적 사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며, ④도급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비의 불법적 사용을 적발할 경우 해당 산안비를 환수해야 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부대의견

없 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10. 기타사항

없 음